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생활과학석사학위논문

# 양육수당이 자녀 양육 방식 선택에 미치는 영향

: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를 중심으로

2014년 0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최 슬 민

양육수당이 자녀 양육 방식  
선택에 미치는 영향

: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진 미 정

이 논문을 생활과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최 슬 민

최슬민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 국문초록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금지원 성격의 양육지원정책은 크게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으로 구분된다. 보육료/유아학비는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정에게, 양육수당은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보육료 지원은 2006년 도입, 양육수당은 2009년 도입 이후,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2013년 현재에는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 중 한 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양육지원정책에서 양육방식의 선택권이란 가정양육(부모의 양육과 도우미의 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등 다양한 양육 방식 중 부모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의 양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서구의 정책 사례를 보면 양육수당은 양육 방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도입되는데, 실제 효과는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거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양육수당이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 방식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어머니의 양육수당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둘째,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 여부에 양육수당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영유아를 한 명 이상 양육하는 어머니 4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자료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수당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

육 방식의 일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첫째, 양육수당의 선택에는 어머니의 취업여부, 첫째자녀 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첫째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취업모보다 미취업모인 경우에 양육수당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둘째,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에는 어머니의 취업여부, 첫째자녀 연령, 양육수당 수급여부와 취업여부의 상호작용항이 영향을 미쳤다. 본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취업모보다 미취업모인 경우에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이 일치하였다. 또한 미취업모인 경우,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어머니가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이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양육 방식의 선택이 계층적인 요소로 결정되지 않으며, 양육수당이 미취업모의 자녀 양육 방식 선택권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육서비스 제공의 정책이 중심이 된 우리나라의 양육환경에서 양육수당은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양육수당이 가진 자녀 양육 방식의 선택권을 살펴보고, 새로운 정책인 양육수당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 양육수당, 보육료/유아학비, 선택권, 자녀 양육 방식, 현금지원정책

**학 번** : 2010-23637

# 목 차

I. 문제제기 .....	1
II. 선행연구 고찰 .....	6
1. 한국 양육수당의 확대과정 .....	6
2. 양육수당과 자녀 양육 방식의 선택 .....	11
1) 양육수당과 선택권 .....	11
2) 자녀 양육 방식과 선택권 .....	15
3) 자녀 양육 방식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7
III. 연구문제 .....	21
IV. 연구방법 .....	22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	22
2. 변수의 정의와 측정도구 .....	23
1) 양육수당의 선택여부(수급여부) .....	23
2)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 .....	24
3) 양육수당 수급여부와 취업여부의 상호작용항 .....	24
4) 사회인구학적 특성 .....	25
3. 분석 방법 .....	26
V. 연구결과 .....	27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27

2. 어머니의 양육수당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9
3.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3
 VI. 결론 및 논의 .....	 42
 참고문헌 .....	 47
부 록 .....	52
Abstract .....	56

## 표 목 차

<표 1> 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의 정책 확대과정 .....	10
<표 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28
<표 3>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의 선택빈도 .....	29
<표 4> 첫째자녀의 연령에 따른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의 선택빈도 ...	30
<표 5> 양육수당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2
<표 6> 현재 양육 방식과 이상적인 양육 방식의 선택빈도 .....	34
<표 7> 양육 방식 선택에 따른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 .....	36
<표 8> 현재 양육 방식에 따른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 .....	36
<표 9>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	40



## 그 래 프 목 차

<그래프 1>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수당 수급여부와 취업여부의 상호작용 효과.....	41
---	----

# 부 록 목 차

<부록 1> 설문지 .....	52
------------------	----

## I . 문제제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금지원성격의 양육정책은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이다. 보육료/유아학비는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정에게, 양육수당은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양육수당은 2009년 정책의 도입 이후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정책에 비해 소극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아이의 양육은 양육 방식이 어떤 것이든 국가가 일정부분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어가는 동시에, 보육료 지원을 받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과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형평성 문제와 보육료 지원으로 인한 보육시설의 가 수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2013년부터 양육수당의 수혜범위는 대폭 확대되었다. 2013년부터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라면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13).

양육수당은 다른 양육정책인 공공 보육시설의 증대 정책이나 육아휴직과 같은 휴가정책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돕고, 출산을 제고할 꾀하며, 보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공통된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 양육수당을 좀 더 주시해야 하는 이유는 본 정책의 성격이 현금지원이라는 데 있다. 사회정책에 있어 현금지원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 수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양육수당이 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 양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녀 양육 방식 선택이란 부모가 자녀를 가정 내에서 직접 양육할 것인지 혹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와 같이 누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말한다. 양육수당

의 선택권이란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의 선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송다영, 2009; CNAF, 2003, Morel, 2006 재인용; Morel, 2006; Hiillamo & Kangas, 2003).

양육수당은 한국의 양육지원정책 중 부모의 양육 방식 선택권 증진의 효과를 지니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이 가진 양육 방식 선택권을 평가할 때,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선택권 강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유해미, 2012). 양육수당 이전에는 보육시설의 가수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만큼 자녀의 양육 방식이 시설보육으로 지나치게 집중된 점이 있었다. 하지만 국가가 가정 내 양육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 줌으로써 부모에게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양육정책 설계 상 자녀 양육 방식은 가정에서의 양육(양육수당)과 시설에서의 양육(보육료/유아학비)중에 선택하도록 재조정되었다. 그 동안 시설양육 방식의 선택을 강화하던 정책에서 탈피하여 양 쪽 모두의 양육 방식의 선택을 지지하고 좀 더 균등하게 선택권을 제공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육수당의 정책 효과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양육수당이 부모에게 양육 방식의 선택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이다. 실제로 그 동안 많은 국가에서 양육정책에 있어서의 현금지원은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었다. 그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양육 방식의 선택이 사실상 계층적으로 차별화 되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사회정책에서 현금지원을 시행했던 국가들에서는 현금지원을 통한 양육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사회정책에서 자유선택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자유선택이 필연적으로 가진 계층성을 지적하였고(Kremer, 2002), 또한 프랑스에서도 현금지원정책의 도입 이후, 경제적 계층에 따라 각기 다른 사회정책을 선택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Morel,

2006). 우리나라 역시 양육수당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양육수당이 지니는 계층적인 문제를 경고하였다. 양육정책 내 자유선택은 부모의 지불능력에 의해 결정되기에 허구성이 있으며 보육공공성의 후퇴와 함께 계층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송다영, 2009; 송다영, 2010). 양육수당은 계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사람은 오직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고소득계층임을 지적하였다(유해미, 2009).

현재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의 효과와 관련된 실증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양육수당의 지닌 계층효과와 허구성에 관련된 연구들은 우리나라의 실증연구가 아닌 주로 해외의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송다영, 2009; 송다영, 2010; 유해미, 2009; 이진숙, 2010; 홍승아, 2005; 홍승아, 2008; 홍승아, 2011).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은 외국의 양육수당과 달리 도입 배경 및 목적, 그리고 실질적인 실행에 있어서 그 양태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양육수당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시설보육 위주의 정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양육수당의 효과는 외국의 사례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OECD Family Database(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양육수당 지급금액은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대비 약 5.6%정도로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북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서 나타난 양육수당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sup>1)</sup> 이처럼 우리나라

---

1) OECD Family Database(2013)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도시근로자 연평균 임금대비 양육수당(Family Benefits) 지원 금액의 비율은 북유럽국가인 핀란드가 3.0%, 스웨덴이 3.4%를 나타냈으며, 프랑스는 2.1%에 불과하였다. 도시근로자 연평균 임금대비 양육수당 지원 금액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영국으로 8.3%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는 2010년 당시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공식적

라의 양육수당이 어떤 효과가 나타날 지에 대해 예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양육수당의 시행이 자녀 양육 방식 선택권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영유아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양육 지원정책 중 보육료/유아학비 대신 양육수당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양육수당이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봄으로써 자녀 양육 방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의 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가 없었고, 양육수당의 독특한 정책목표인 선택권에 집중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시도는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어머니가 자녀 양육지원정책 중 양육수당을 선택하는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누가 보육료/유아학비가 아닌 양육수당을 선택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Morel, 2006; Eydal & Rostgaard, 2011; Hiillamo & Kangas, 2003)들에 착안하여, 소득이 양육수당을 선택하는데 영향력이 있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양육수당이 양육 방식 선택권 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양육지원정책에서 양육 방식의 선택권이란 가정 양육(부모의 양육과 도우미의 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등 다양한 양육 방식 중 부모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의 양육 방식을

---

인 기록은 없으나,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도시근로자 연평균임금(약 3200만원) 대비 양육수당의 지급금액(약 15만원\*12개월 = 약 180만원)의 비율을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약 5.6%가 도출된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 방식의 선택권을 측정하는 변수로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로 선정하였다.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이 일치한다면 어머니의 양육 방식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설정하였다. 양육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함께 투입하여 양육수당이 양육 방식 선택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한국 양육수당의 확대과정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범국가적으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자녀양육비부담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양육지원정책을 시행하였다.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보육료 및 유아학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양육지원 정책이다. 양육수당은 보육료지원 정책과 함께 유기적으로 확대 시행되어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정책의 변화를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양육수당의 확대과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은 2009년 7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 이하까지의 계층에 한하여 만 0~1세(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급하였던 아동양육수당을 그 시초로 한다. 이후, 계속하여 양육수당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2010년 2월 보건복지가족부는 ‘아이사랑플랜 2010년 시행계획’을 통해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기존 7만 7000명에서 11만 4,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으며(보건복지가족부, 2010), 더불어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을 통해 영유아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보건복지부, 2011a). 또한 2010년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면서 양육수당의 대상을 만 0~1세에서 만 0~2세로,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기획재정부, 2010). 이로 인해



2011년 1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 이하 아동에 한하여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는데, 지원 대상의 연령은 기존의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지원 금액은 월 10만원에서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으로 증액되었다(보건복지부, 2011b). 2011년 1월 이후 2013년 양육수당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기 이전까지 양육수당은 2011년 수준으로 머물러 있었다.

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를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는 양육수당에 비해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되었다. 2006년 7월 여성가족부(2006)에서 발표한 제 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년)인 ‘새싹플랜’에서는 2009년까지 차등보육료를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까지 확대하여 보육시설 영아반 지원 금액을 현실화 하고자 하였다. 2009년 이전에는 차상위계층 이하까지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였으며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는 보육료의 80%, 50~70%의 가구는 보육료의 60%, 70~100%의 가구는 보육료의 30%를 지원하였다. 정권이 교체되고 2008년 보육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는데, 보건복지가족부는 아이사랑플랜(2009-2012년)에서 만 0~4세의 보육료 전액지원을 2012년까지 소득하위 80%수준으로 확대한다고 계획하였다. 또한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에는 만 0~4세의 영유아가구 중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의 가구에 대해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었으며(보건복지가족부, 2009),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에서는 만 0~4세의 영유아가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이하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보건복지부, 2011c). 실제로 2009년 소득하위 70%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4

세 영유아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보육료를 본격 지원하기 시작하였다.<sup>2)</sup> 이에 이어, 2011년 3월부터는 만 0~4세까지의 아동이 있는 소득하위 70%이하(소득인정액 기준 480만원 이하)까지의 가구에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였다. 2012년에도 다시 한번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었는데, 2012년 3월부터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만 0~2세와 만 5세의 무상보육<sup>3)</sup>이 전격적으로 도입, 시행되었다. 만 0~2세의 아동에게는 보육료가 전 계층에게 지원되었고 만 3~4세는 소득하위 70%까지, 만 5세는 전 계층에 지원되었다(보건복지부, 2013).

하지만 2012년 영아의 무상보육이 실시된 이후, 가정 내 양육을 정책적으로 배제하였다며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 사이의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였다. 서문희(2012)는 현 정책은 부모가 선택의 여지없이 시설에 아이를 보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으며, 백선희(2012)는 2012년 무상보육 시행 이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들이 양육수당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가정 내 양육을 하는 부모가 보육시설에 등록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보육시설의 가수요문제가 발생하였다. 서문희(2012)는 보육료를 만 0~2세의 자녀를 둔 모든 계층의 가정에게 지원하면서 많은 가정들이 대거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고 신청하여 비정상적으로 어린이집을 과용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숙, 이수진(2012)은 양육수당은 시설 이용과 비교했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많아 부모들이 오히려 시설에 다니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 자연스럽게 보육시설에 수요가 몰리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

2) 차상위계층 미만과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50%이하는 보육료의 100%, 50~70%의 가구는 보육료의 60%, 70~100%의 가구는 보육료의 30%를 지원받았다.

3)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의 연장으로 만 5세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2012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2013년 보육료 및 양육수당 확대 개편안에서는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지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모의 선택권이 제고될 필요가 있으며 가정양육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양육수당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하여 만 0~2세는 시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하위 70%까지 양육수당을 자녀에 연령에 따라 만 0세는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세 10만원으로 차등 지원하며, 만 3~5세의 양육수당은 신규로 도입하여 시설 미이용시 소득인정액 하위 70%까지 월 1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최현수 외, 2012). 같은 해, 새누리당(2012a)은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집을 통해 만 0~5세까지의 양육수당을 전 계층으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에 이어 제 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양육수당을 만 0~2세의 전 계층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새누리당, 2012b). 이에 따라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만0~5세의 아동을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확대 개편되었다. 이로써, 만 12개월 미만의 아동에게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취학 전 아동에게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었다. 이와 더불어 보육료 지원 역시 확대 개편되었는데, 2013년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5세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소득 및 재산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표 1> 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의 정책 확대과정

		보육료/유아학비 (시설 이용)		양육수당 (시설 미이용)	
2008년	지원 대상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이하		없음	
	대상 연령	만 0~4세	만 5세		
	지원 금액	소득과 연령에 따라 차등지원	기본보육료		
2009년	지원 대상	소득하위 70%이하		차상위 계층 이하	
	대상 연령	만 0~4세	만 5세	만 0~1세 (24개월 미만)	
	지원 금액	소득과 연령에 따라 차등지원	기본보육료	월 10만원	
2010년	지원 대상			2009년과 동일	
	대상 연령	2009년과 동일			
	지원 금액				
2011년	지원 대상	소득하위 70%이하		차상위 계층 이하	
	대상 연령	만 0~4세	만 5세	만 0~2세 (36개월 미만)	
	지원 금액	보육료 전액지원	2009년과 동일	월 10~20만원	
2012년	지원 대상	전 계층	소득하위 70%이하	2011년과 동일	
	대상 연령	만 0~2세	만 3~4세		만 5세
	지원 금액	연령에 따라 차등지원	기본보육료		
2013년	지원 대상	전 계층			
	대상 연령	만 0세~5세			
	지원 금액	연령에 따라 차등지원			

## 2. 양육수당과 자녀 양육 방식의 선택

### 1) 양육수당과 선택권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이 부모의 양육 방식에 선택권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다룬 논문은 아직 없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양육수당의 정책 기대효과 중 하나인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 선택권 증진에 관한 국내의 논의와 해외의 사례를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송다영(2009)는 아동양육에 있어 자유선택(freedom of choice)을 ‘부모가 여러 가지 보육의 방식 중 자신의 자녀를 어떤 방식이나 어떤 형태로 양육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진숙(2010) 역시 양육정책에서 선택의 자유라는 이슈에 접근할 때에는 가족들이 선택권을 통해 어떠한 생활양식이나 양육 방식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실현하는가로 양육정책의 자유선택을 이해해야한다고 언급하였다. 프랑스의 국가 가족 기금(CNAF, 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인 CNAF(2003)은 양육에 있어서 자유선택은 일로부터 자유로워짐, 노동시장으로부터 아동양육으로의 이동, 그리고 어떻게 아이를 적절하게 양육하는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Morel, 2006 재인용). 마찬가지로 Morel(2006)은 부모의 자녀양육에 있어 자유선택은 부모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다양한 양육의 형태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지를 의미한다고 명시하였다. Hiillamo & Kangas(2003)은 핀란드에서도 양육정책에 있어 자유란 가족들이 다양한 양육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을 의미한다고 언급하였다.

아동양육의 선택에 대한 논의는 돌봄정책의 시장화 논의와 함께 등장하였다. 먼저 왜 돌봄정책에서 시장화가 도입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에 관한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Brennan et al.(2012)은 돌봄정책의 시장화란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하여 돌봄을 상품화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자는 판매자로 돌봄을 이용하는 자는 구매자로의 전환이라고 정의하였다. Blank(2000)와 Greener(2008)의 연구에 따르면, 시장을 통한 보육서비스 전달은 두 가지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보육을 소비하는 수혜자들이 보육에 있어 소비자주권을 행사함으로써 그들이 상품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부여받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보육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시장의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비용은 감소시키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Arksey & Kemp (2008)와 Freedman & Boyer (1999), Breda et al. (2006)의 연구에서도 현금지원 정책의 일반적인 정책기대효과는 개인이 스스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것이며 전통적으로 전달체계에서만 전달받아 내려온 서비스를 수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였다.

Brennan et al.(2012)에 따르면 20세기 후반 자유경쟁체제와 선택의 자유를 옹호하는 신자유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과 동시에 공공영역에 대한 재정부족에 대한 압박은 각국이 공공영역의 시장화를 정책적으로 채택하도록 이끌었다. 실제로 각국에서는 보육영역의 시장화를 피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해 나갔다. 전통적으로 보육영역의 공공성을 중요시하던 북유럽국가에서도 1990년대 이후 보육재정 상태의 악화와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적 흐름을 바탕으로 보육영역을 사유화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갔으며, 보육영역의 사유화는 결국 보육수혜자들에게 현금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유도하였다(Blomqvist, 2004). 홍승아(2005)는 프랑스 역시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공공영역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설제공

보다는 현금지원 정책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양육수당이 실질적으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동안 국내외 관련연구에서 현금지원정책은 부모의 선택권을 공평하게 보장하기 보다는 양육 방식 선택에 계층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Morel(2006)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다양한 정책 선택지를 제시하며 현금지원을 통한 아동양육정책 시행하였는데, 소득계층별로 다른 양육정책을 선택하여 아동양육정책이 사회계층을 고착화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하였다. Eydal & Rostgaard(2011)는 북유럽 국가의 사례를 들어 현금지원정책의 도입 이후, 저소득계층과 이민자 가족은 현금지원을 받고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고, 중간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의 아이들은 현금지원 없이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계층 간의 분리를 야기하였다고 지적하였다. Hiillamo & Kangas(2003) 역시 양육정책이 사적영역이 되어 국민이 정책의 소비자로서 보육정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 높은 교육수준의 소비자가 더 많은 자원과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양육수당 도입 및 확대에 관한 논의의 방향도 위의 논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송다영(2009)은 프랑스의 사례를 바탕으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확보 없이 자유선택의 명목아래 보육을 개별화, 시장화 하는 것은 소득계층별, 성별, 가족형태별 계층화를 유발한다고 지적하였고, 홍승아(2005) 역시 프랑스의 보육정책을 자세히 제시하면서 양육수당의 도입 이후, 소득계층별로 부모가 다른 보육정책의 혜택을 받으며 다른 양육 방식을 선택하였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프랑스에서의 양육수당지원의 확대는 프랑스의 공보육서비스 제공과는 대조적으로 반 재분배적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스웨덴의 양육수당정책을 바탕으로 분석한

유해미(2009)도 양육수당의 선택권에 대한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아동 양육에 있어 현금지원은 저소득층과 저학력의 어머니들에게 더 선호되며, 자유선택은 결국 보편적인 권리의 확대가 아닌 시장에 지불능력을 지닌 가정의 권리만을 보호한다고 밝히고 있다.

양육수당과 관련하여 양육 방식의 선택권을 다룬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해외의 양육수당사례를 바탕으로 양육수당의 선택권을 비판하고 있으며(송다영, 2009; 송다영, 2010; 유해미, 2009; 홍승아, 2005; 홍승아, 2008; 홍승아, 2011),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에 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양육수당 도입 배경과 설계는 외국의 양육수당의 도입 배경 및 설계와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외국과 같은 정책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추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은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선택권을 부여하여 현재 보육서비스를 양육수당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라, 미취업모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발생한 보육시설 가수요 문제를 해결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과의 형평성을 위해 확대되었기 때문에 외국의 양육수당의 사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OECD Family data(2013)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의 지급액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대비 약 5.6%정도로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북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높다. 양육수당이 저소득계층에서 임금소득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보고된 것처럼 양육 방식의 계층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존재한다.

양육수당 지급 확대 이후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2013년 3월 기준 만 0세와 1세의 이용률은 각각 12.2%, 57.7%로 지난 1월보다 6.2%포인트와 11.1%포인트씩 줄었고, 지난해 3월과 비교해도 만 0~1세 평균 이용률이



0.6%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부모에게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양육수당이 자녀 양육 방식 선택권 증진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의견은 매우 분분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양육수당이 실증적으로 부모의 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증진시켰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이 부모의 양육 방식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영유아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양육지원 방식 중 보육료/유아학비 대신 양육수당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알아봄으로써 누가 양육 방식을 선택하는지 살펴보고 양육수당이 양육 방식의 계층화를 유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영유아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에 양육수당이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를 살펴봄으로써 양육수당이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 선택권을 증진시켰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 2) 자녀 양육 방식과 선택권

부모가 자녀를 가정 내에서 양육할지, 가정 내에서 다른 도우미에 의해 양육할지, 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에서 양육할지와 같이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를 설명할 때 양육 방식, 돌봄 유형, 아동 양육 형태 등으로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유해미(2011)는 가정 내 양육과 기관 이용의 선택을 ‘양육 방식’ 선택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였고, 한유미(2010)도 마찬가지로 자녀의 직접 양육, 기관 양육 등의 선택을 ‘양육 방식’ 선택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였다. 최상설, 홍경준(2012)은 직접양육, 개인대리양육, 시설 양육을 포함하는 용어로 ‘아동

돌봄 유형'을 사용하였으며, 윤홍식(2010)은 '아동 양육 형태'를 사용하였다. 용어의 혼동을 없애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누구에게 그리고 어디에서 양육하는지를 나타내는 용어를 '양육 방식'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양육 방식과 관련하여 '선택권'이라는 용어 역시 학자마다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유해미(2006)는 양육지원정책에 대한 선택권 개념을 부모들(특히 여성들)의 양육/노동시장 참여 간의 선택과 양육 지원 방식들 간의 선택이라고 제시하였다. 유해미 외(2011)는 양육수당 수급에 따라 양육 방식을 변경 할 수 있는지를 양육수당의 선택권 보장의 측정요소로 사용하였다. 일하는 부모의 경우 일과 자녀 양육의 양립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일반적인 선택권이라고 정의하였고, 양육수당과 관련된 선택권은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선택권이라고 하여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최상설,홍경준(2012)은 아동 돌봄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은 각각의 가구들에게 허용된 돌봄의 방식 혹은 유형에 대한 선택권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부모의 선택권은 돌봄의 주제공자였던 여성이 생활방식이나 돌봄 방식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개별가구의 돌봄 유형에 대한 선택권이 서비스나 보조금과 같은 국가의 지원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해 본 결과, 양육수당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부모의 선택권은 자녀 양육 방식의 선택권이다. 자녀 양육 방식의 선택권이란 가정양육(부모의 양육과 도우미의 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등 다양한 양육 방식 중 부모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의 양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 가정이 그들이 원하는 양육 방식에 따라 실제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부모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얼마나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지표가 된다. 실질적으로 원하는 양육 방식을 선택하는 데는 각각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상황, 그리고 국가의 정책적 지원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 선택권이 가정마다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고 있는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 그리고 그들이 처해있는 상황적인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수당이 자녀 양육 방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양육수당이 개별 가정이 각자 원하는 양육 방식을 선택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양육수당이 가정 내 양육의 선택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책 설계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양육수당이 자녀를 가정 내에서 양육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부모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양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육수당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양육수당이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 선택권은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로 측정하며,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이 일치하면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 선택권이 보장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 3) 자녀 양육 방식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자녀 양육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특성, 자녀의 특성, 가구 특성, 지역적 특성이 주요 변수로 가정의 자녀 양육 방식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Hammer & Turner(2001)는 양육 방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수입, 가족원의 수,

자녀의 연령, 서비스 이용가능성, 가족의 생활양식을 꼽았으며, 김지경(2005)은 영유아의 교육 보육기관 유형 선택에 미치는 변수로 자녀의 특성, 어머니의 특성, 가구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최상설,홍경준(2012) 역시 아동 돌봄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어머니의 특성, 가구특성, 지역 특성으로 나누어 포함시켰다. 임유경(2008)도 영유아 보육시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수로 가구소득,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 취업유무, 자녀연령, 자녀 수으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자녀 양육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로 가정과 보육을 둘러싼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포함시켰는데 크게 어머니의 특성, 자녀의 특성, 가구의 특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어머니의 특성은 취업여부, 학력, 연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의 취업상태는 양육 선택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취업모는 미취업모에 비해 직접양육 대신 다양한 방식의 대리양육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욱(2008)과 서문희 외(2004)는 취업모인 경우 미취업모에 비해 조부모/육아도우미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밝혔고, 최상설,홍경준(2012), 김지경(2005) 역시 취업모의 경우 대리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서문희(2005, 2010)도 마찬가지로 취업모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어머니와 학력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나 학력이 높아질수록 시설양육을 선택하고 학력이 낮아질수록 가정 내 양육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순미 외(2000)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보육시설이나 교육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높아지며 마찬가지로 김지경(2005), 백은주 외(2011), 윤홍식(2010)은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직접 양육할 경향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대리양육의 경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이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최상설,홍경준(2012)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인증 시설양육보다 직접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어머니의 연령변수의 영향에 관련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최상설,홍경준(2012)과 김지경(2004)은 어머니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접양육 선택의 확률을 높인다고 하였는데 이는 백선희,조성우(2005)의 어머니의 연령의 증가는 대리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결과와는 상반된다.

자녀에 관련된 주요 변수는 자녀의 연령과 자녀 수이다. 자녀가 어릴수록 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한 보육을, 연령이 높을수록 시설 보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허남재,석재은, 2011; 박선옥, 2011). 자녀의 연령과 관련하여 허남재,석재은(2011)은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공식(시설)보육을 이용할 확률이 높으며, 박선옥(2011)은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어린이집/놀이방보다는 유치원을 선택할 확률이 높고,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어린이집/놀이방이나 유치원보다는 조부모/육아도우미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가정 내 양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백선희,조성우, 2005; 임유경, 2008). 자녀의 수와 관련된 연구에서 백선희,조성우(2005)는 미취학 자녀가 많아질수록 보육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고, 임유경(2008)은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가구는 1명인 가구에 비해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가정보육시설 이용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가구와 관련된 특성에는 가구소득, 거주지역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구소득은 양육 방식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박선옥(2011)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어린이집/놀이방에 비해 유치원을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김지경(2004)와 서문희(2005,2010) 역시 유아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거주지역에 관련된 변수의 효과를 규명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

지경(2005)은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시설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박선욱(2011)은 서울 경기지역이 광역시나 도에 비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유치원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어머니의 연령, 취업여부, 학력을 포함하는 어머니관련 변수, 자녀의 수와 자녀의 연령의 자녀변수, 그리고 가구소득 및 거주 지역의 가구관련 변수들이 자녀 양육 방식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수들이 양육지원 방식 중 양육수당 선택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양육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수와 양육수당이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 Ⅲ. 연구문제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영유아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양육지원 방식 중 보육료 /유아학비 대신 양육수당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 영유아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에 양육수당이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V.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첫째자녀가 만 0세부터 4세까지의 영유아 자녀이면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의 승인(IRB No. E1310/001-008)을 받은 후,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만 0세부터 4세의 자녀를 둔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측정도구의 응답분포를 확인하였고, 설문 응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매끄럽지 못한 문항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본조사는 리서치 전문회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수정된 설문지로 온라인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온라인 조사는 리서치 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패널 중 ‘만 0세부터 4세까지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고, 2013년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서두에 설문조사 동의서를 삽입하여<sup>4)</sup> 동의를 구하였고, 설문에 동의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조사대상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조사가 중단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조사대상에 조건에 부합하는 패널만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모든 문항을 응답하여야 설문이 종료되도록 설계되어있기 때문에 회수된 조사 자료에는 결측값이 없었다. 자료 분석은 설문에 끝까지 응

---

4) <부록 1> 설문지 참조



답한 448명 중 현재 보육료/유아학비나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응답한 4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2. 변수의 정의와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살펴본 바를 토대로 하여 양육지원 방식 중 양육수당의 선택(수급)과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를 어떻게 구체화해서 측정하였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양육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추려진 어머니의 연령, 취업여부, 교육수준, 첫째자녀의 연령, 자녀 수, 배우자의 소득, 거주지역의 조작적 정의도 함께 제시한다.

### 1) 양육수당의 선택여부(수급여부)

현재 우리나라의 양육지원정책은 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 중 양자택일로 설계되어있다.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면 보육료/유아학비를 지급받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면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수당을 선택하는지 혹은 보육료/유아학비를 선택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올해는 어떠한 양육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질문하였고 ‘보육료/유아학비’, ‘양육수당’, ‘둘 다 받지 않는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둘 다 받지 않는다’는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양육수당의 선택여부는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양육지원 방식 중 보육료/유아학비 대신 양육수당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양육수당의

수급여부로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한 독립변수로써 모두 사용되었다. ‘보육료/유아학비’는 0으로, ‘양육수당’은 1로 코딩하였다.

## 2)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 측정은 현재 양육 방식과 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양육 방식에 대하여 각각 질문한 후, 그 응답이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살펴봄으로써 측정하였다. 부모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양육 방식대로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자녀 양육 방식의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적인 양육 방식에 대해서 ‘귀하는 귀하의 첫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하였고, 현재 양육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귀하의 첫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질문하였다. 양육 방식에 대한 응답은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양육한다’, ‘가정에서 할머니 등 친인척이 양육한다’, ‘가정에서 아이돌보미 / 베이비시터가 양육한다’, ‘시간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전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시간제 유치원을 이용한다’, ‘전일제 유치원을 이용한다’,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양육 방식과 현재 택하고 있는 양육 방식이 다르면 0으로 같으면 1로 코딩하였다.

## 3) 양육수당 수급여부와 취업여부의 상호작용항

양육수당의 수급여부와 취업여부의 상호작용항은 취업여부에 따라 양육

수당이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였다. 양육수당의 수급여부는 ‘보육료/유아 학비’는 0으로, ‘양육수당’은 1로 코딩하였으며, 취업여부는 ‘취업하고 있다’는 ‘취업’으로 재변수화 하여 0으로 코딩하였고 ‘전에는 했지만 그만두었다’와 ‘한 번도 취업한 적이 없다’는 ‘미취업’으로 재변수화 하여 1로 코딩하였다. 이 두 변수를 조합하여 양육수당 수급여부와 취업여부의 상호작용항을 제시하였다.

#### 4) 사회인구학적 특성

##### (1) 연령

연령은 응답자가 만 나이를 직접 적도록 하였다.

##### (2) 취업여부

취업여부는 ‘취업하고 있다’, ‘전에는 했지만 그만두었다’, ‘한 번도 취업한 적이 없다’로 구성된 선택지를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 시 취업상태는 취업여부로 변수화 하여 ‘취업하고 있다’는 ‘취업’으로 재변수화 하여 0으로 코딩하였고 ‘전에는 했지만 그만두었다’와 ‘한 번도 취업한 적이 없다’는 ‘미취업’으로 재변수화 하여 1로 코딩하였다.

##### (3) 교육수준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전문(2,3년제)대학 졸’, ‘4년제 대학 졸’, ‘대학원이상 졸’로 구성된 선택지를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하였다.

(4) 첫째자녀 연령

첫째자녀의 연령은 응답자가 만 나이를 직접 적도록 하였다.

(5) 자녀 수

자녀 수는 응답자가 자녀 수를 직접 적도록 하였다.

(6) 배우자의 소득

배우자의 소득은 8단계로 나누어 '100만원 이하'부터 '700만원 이상'까지 100만원 단위로 측정하였으며 모두 8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600만원 이상~700만원 이하'와 '700만원 이상'은 응답자의 수가 적어 응답을 묶어 같은 값으로 코딩하였다.

(7) 거주지역

거주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으로 구성된 선택지를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하였다.

### 3. 분석 방법

먼저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에는 STATA 12.0이 사용되었다.

## 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응답한 대상자는 432명, 모두 여성이며, 평균연령은 32.35세이다. 연령은 만 25세~29세가 80명(18.52%), 만 30세~34세가 251명(58.10%), 만 35세~39세가 97명(22.45%), 만 40세~44세가 4명(0.93%)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업여부는 취업이 213명(49.31%), 미취업이 219명(50.69%)을 나타내었으며,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67명(15.51%), 전문(2,3년제)대학 졸업이 103명(23.84%), 4년제 대학 졸업이 224명(51.85%), 대학원이상 졸업이 38명(8.80%)으로 나타났다.

첫째자녀 연령을 살펴보면 만 0세 50명(11.57%), 만 1세 98명(22.69%), 만 2세 74명(17.13%), 만 3세 102명(23.61%), 만 4세 108명(25.00%)으로 나타났고, 자녀 수는 1명이 302명(69.91%), 2명이 120명(27.78%), 3명이 10명(2.31%)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우자의 소득은 월 100만원 미만인 12명(2.78%), 월 100~200만원 미만이 43명(9.95%), 월 200~300만원 미만이 157명(36.34%), 월 300~400만원 미만이 128명(29.63%), 월 400~500만원 미만이 8명(11.11%), 월 500~600만원 미만이 32명(7.41%), 월 600만원 이상이 12명(2.78%)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대도시가 258명(59.72%), 중소도시가 155명(35.88%), 읍·면 지역 19명(4.40%)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개인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만 25세 ~ 29세	80	18.52
	만 30세 ~ 34세	251	58.10
	만 35세 ~ 39세	97	22.45
	만 40세 ~ 44세	4	.93
	평균(표준편차)		32.35(3.02)
결혼유무	미혼	1	.23
	기혼	425	98.38
	이혼/별거	6	1.39
취업여부	취업	213	49.31
	미취업	219	50.69
교육수준	고졸 이하	67	15.51
	전문(2,3년제)대학 졸	103	23.84
	4년제 대학 졸	224	51.85
	대학원이상 졸	38	8.80
첫째 자녀 연령	만0세	50	11.57
	만1세	98	22.69
	만2세	74	17.13
	만3세	102	23.61
	만4세	108	25.00
자녀 수	1명	302	69.91
	2명	120	27.78
	3명	10	2.31
배우자의 소득	월 100만원 미만	12	2.78
	월 100~200만원 미만	43	9.95
	월 200~300만원 미만	157	36.34
	월 300~400만원 미만	128	29.63
	월 400~500만원 미만	8	11.11
	월 500~600만원 미만	32	7.41
	월 600만원 이상	12	2.78
거주지역	대도시	258	59.72
	중소도시	155	35.88
	읍·면지역	19	4.40
전체		432	100.00

## 2. 어머니의 양육수당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의 선택 빈도는 <표 3>과 같다. 조사응답자 432명 중 266명(61.57%)는 보육료/유아학비를 선택하였으며, 166명(37.43%)은 양육수당을 선택하였다. 첫째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의 선택빈도는 <표 4>와 같다. 만 0세의 경우, 보육료/유아학비를 선택한 어머니가 3명(6.00%), 양육수당을 선택한 어머니가 47명(94.00%)이었다. 만 1세는 각각 29명(29.59%), 69명(70.41%), 만 2세는 44명(59.46%), 30명(40.54%), 만 3세는 89명(87.25%), 13명(12.75%), 만 4세는 89명(87.25%), 13명(12.75%)이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을 각각 선택하였다.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수당에 비해 보육료/유아학비를 수급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만 0세와 만 1세의 어린 자녀는 보육시설보다 가정 내에서 양육하고, 만 2세를 기점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보다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표 3>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의 선택빈도

	빈도(명)	백분율(%)
보육료/유아학비	266	61.57
양육수당	166	38.43
	432	100.00

<표 4> 첫째자녀의 연령에 따른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의 선택빈도

		양육 방식의 선택		합계(%)
		보육료/유아학비(%)	양육수당(%)	
첫째 자녀의 연령	만 0세	3(6.00)	47(94.00)	50(100.00)
	만 1세	29(29.59)	69(70.41)	98(100.00)
	만 2세	44(59.46)	30(40.54)	74(100.00)
	만 3세	89(87.25)	13(12.75)	102(100.00)
	만 4세	101(93.52)	7(6.48)	108(100.00)
		266(61.57)	166(38.43)	432(100.00)

양육수당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본 모델은 <연구문제 1>의 분석결과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변수로 투입하여 양육수당의 선택여부를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았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로는 어머니의 개인변수로서 연령, 취업여부, 교육수준이 자녀변수로서 첫째자녀의 연령과 자녀 수가, 가구변수로서 배우자의 소득과 거주지역이 포함되었다.

이를 분석한 결과, 양육수당을 선택하는데 취업여부, 첫째자녀 연령이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가, 첫째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미취업모는 취업모에 비해 3.81배, 첫째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0.26배 양육수당을 선택할 승산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양육수당의 선택은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보육시설보다 가정 내 양육을 선택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허남재, 석재은, 2011; 박선욱, 2011)와도 일치한다. 또한 자녀의 연령에 상관없이 취업을 하지 않은 어머니는 자녀를 가정 내에서 양육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취업모일수록 양육수당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배우자의 소득변수는 양육수당을 선택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 결과는 양육수당이 양육 방식의 계층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지 않는다(Morel,2006; Eydal & Rostgaard. 2011; Hillamo& Kangas, 2003). 우리나라에서는 양육수당의 수급여부가 계층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취업여부나 자녀에 연령에 의해 결정된다. 오히려, 양육수당은 가정 내에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의 양육수당과 한국의 양육수당은 정책적으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양육수당의 계층화 효과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표 5> 양육수당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 (S.E.)	승산비
상수		2.96(1.62)	
사회인구학적 변수			
개인변수	연령	-.01(.05)	.99
	취업여부 <sup>1)</sup>	1.34(.29)**	3.81
	교육수준 <sup>2)</sup>		
	전문(2,3년제)대학 졸	.03(.46)	1.03
	4년제 대학 졸	.38(.43)	1.46
	대학원이상 졸	.62(.60)	1.85
자녀변수	첫째자녀 연령	-1.35(.15)**	.26
	자녀 수	-.57(.32)	.57
가구변수	배우자의 소득		
	거주지역 <sup>3)</sup>		
	중소도시	.34(.30)	1.40
	읍·면지역	.03(.75)	1.04
유효수(N)		432	
Likelihood X2(df)		232.31(10)**	
-2Log likelihood		-171.60	
*p<.05 **p<.01			
1) 0= 취업, 1=미취업			
2) 기준집단 : 고졸 이하			
3) 기준집단 : 대도시			

### 3.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응답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선택빈도는 <표 6>과 같다. 이상적인 양육 방식에 대한 응답은 조사대상자 432명 중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양육한다' 233명(53.94%), '가정에서 할머니 등 친인척이 양육한다' 32명(7.41%), '가정에서 아이돌보미 / 베이비시터가 양육한다' 0명(0.00%), '시간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69명(15.97%), 전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65명(15.05%), '시간제 유치원을 이용한다' 19명(4.40%), '전일제 유치원을 이용한다' 12명(2.78%), '기타' 2명(0.46%)로 나타났다. 현재 양육 방식에 대한 응답은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양육한다' 139명(32.18%), '가정에서 할머니 등 친인척이 양육한다' 58명(13.43%), '가정에서 아이돌보미 / 베이비시터가 양육한다' 0명(0.00%), '시간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78명(18.06%), 전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111명(25.69%), '시간제 유치원을 이용한다' 18명(4.17%), '전일제 유치원을 이용한다' 22명(5.09%), '기타' 6명(1.39%)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양육 방식으로는 주로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양육한다'를 선택하였다. '시간제 및 전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응답도 30%가 넘는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양육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시간제/전일제 유치원을 이용한다'의 응답비율이 낮게 나온 것은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유치원을 주로 이용하는 만 5세를 제외한 만 0세 ~ 4세까지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표 6>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선택빈도

	이상적인 양육 방식(%)	현재 양육 방식(%)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양육한다	233(53.94)	139(32.18)
가정에서 할머니 등 친인척이 양육한다	32(7.41)	58(13.43)
가정에서 아이돌보미 / 베이비시터가 양육한다	0(0.00)	0(0.00)
시간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69(15.97)	78(18.06)
전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65(15.05)	111(25.69)
시간제 유치원을 이용한다	19(4.40)	18(4.17)
전일제 유치원을 이용한다	12(2.78)	22(5.09)
기타	2(.46)	6(1.39)
	432(100.00)	432(100.00)

양육 방식의 수급여부에 따른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는 <표 7>과 같다. 조사응답자 432명 중 284명(65.74%)이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이 일치하였으며, 148명(34.26%)이 불일치하였다. 양육 방식 선택에 따른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를 살펴보면, 보육료/유아학비를 수급하는 응답자 266명 중 155명(58.27%)이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1명(41.73%)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응답자 166명 중 129명(77.71%)이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7명(22.29%)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수당을 선택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 보다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를 원하지만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부모들이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상황이 괴리가 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육 방식에 따른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는 <표 8>과 같다.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양육한다’는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이 일치하는 응답자가 129명으로 92.81%를 차지했으며, 불일치하는 응답자는 10명으로 7.19%였다. ‘가정에서 할머니 등 친인척이 양육한다’는 각각 25명(43.10%), 33명(56.90%), ‘시간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48명(61.54%), 30명(38.46%), ‘전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57명(51.35%), 54명(48.65%), ‘시간제 유치원을 이용한다’는 15명(83.33%), 3명(16.67%), ‘전일제 유치원을 이용한다’는 10명(45.45%), 12명(54.54%)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양육한다’가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간제 유치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미취업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해 볼 수 있다. 이들은 취업모에 비해 양육 방식의 선택지가 넓기 때문에 이상적인 양육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이 일치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시간제 유치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일치도가 높은 것은 교육이라는 뚜렷한 목적성을 가진 가정에서 유치원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가정에서 할머니 등 친인척이 양육한다’의 경우에는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이 불일치하는 비율이 일치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중요도를 두고 있으나 직접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타인에게 자녀를 대리양육하는 것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전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와 ‘전일제 유치원을 이용한다’는 ‘시간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와 ‘시간제 유치원을 이용한다’에 비해 불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

는 주로 미취업모로 하루에 일정시간 동안만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 자발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반면, 전일제 보육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어머니는 취업모로 양육 방식의 선택지가 전일제 보육시설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비자발적인 양육 방식의 선택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표 7> 양육 방식 선택에 따른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

양육 방식 선택	보육료/유아학비 양육수당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		합계(%)
		일치(%)	불일치(%)	
	보육료/유아학비	155(58.27)	111(41.73)	266(100.00)
	양육수당	129(77.71)	37(22.29)	166(100.00)
		284(65.74)	148(34.26)	432(100.00)

<표 8> 현재 양육 방식에 따른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

현재 양육 방식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		합계 (%)
		일치 (%)	불일치 (%)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양육한다	129 (92.81)	
가정에서 할머니 등 친인척이 양육한다	25 (43.10)	33 (56.90)	58 (100.00)	
가정에서 아이돌보미 / 베이비시터가 양육한다	0 (0.00)	0 (0.00)	0 (0.00)	
시간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48 (61.54)	30 (38.46)	78 (100.00)	
전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57 (51.35)	54 (48.65)	111 (100.00)	

시간제 유치원을 이용한다	15 (83.33)	3 (16.67)	18 (100.00)
전일제 유치원을 이용한다	10 (45.45)	12 (54.54)	22 (100.00)
기타	0 (0.00)	6 (100.00)	6 (100.00)
	284 (65.74)	148 (34.26)	432 (100.00)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이항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본 모델은 <연구문제 2>의 분석결과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양육수당 수급여부를 변수로 투입하여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를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았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로는 어머니의 개인변수로서 연령, 취업여부, 교육수준이 자녀변수로서 첫째자녀의 연령과 자녀 수가, 가구변수로서 배우자의 소득과 거주지역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모형 중 <Model 1>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양육수당의 수급여부 변수를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를 설명하는 변수로 포함하였고 <Model 2>는 양육수당의 수급여부와 취업여부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Model 1>에 포함되었던 변수들과 더불어 양육수당 수급여부와 취업여부의 상호작용항을 변수를 포함하여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Model 1>을 살펴보면,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를 설명하는 변수는 어머니의 취업여부, 첫째자녀 연령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취업모보다 미취업모인 경우, 첫째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이 일치한다. 취업모에 비해 미취업모가 3.48배, 첫째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0.79배,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이 일치할 승산이 있다.

이는 미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상대적으로 가정에서 양육하거나 보육시설 내에서 양육하는 두 가지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미취업모는 취업모와 달리 가정 내에서 직접 양육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이 일치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양육 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8>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도가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양육수당의 수급여부는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양육수당의 수급여부가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Model 2>을 살펴보면,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 여부를 설명하는 변수는 취업여부, 첫째자녀 연령, 양육수당 수급여부와 취업여부의 상호작용항으로 나타났다.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일 경우, 첫째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이 일치한다. 취업모에 비해 미취업모가 2.37배, 첫째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0.79배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이 일치할 승산이 있다. <Model 2>에 추가한 양육수당 수급여부와 취업여부의 상호작용항은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1>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미취업모의 경우 양육수당 수급자라면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이 일치할 승산이 높아진다. 즉, 미취업모에게 양육수당은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양육수당은 모든 어머니에게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이 일치하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미취업모에게 그들이 원하는 양육 방식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다. 미취업모들에게 양육수당은 자녀 양육 방식의 선택권 실현에 도움을 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육수당의 확대 시행은 미취업모들이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이는 양육수당이 보육시설 내 가수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9>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Model 1		Model 2	
	b (S.E.)	승산비	b (S.E.)	승산비
상수	3.41(1.46)		3.31(1.38)	
사회인구학적 변수				
개인변수				
연령	-.05(.04)	.95	-.05(.04)	.95
취업여부 <sup>1)</sup>	1.25(.24)**	3.48	.86(.28)**	2.37
교육수준 <sup>2)</sup>				
전문(2,3년제)대학 졸	-.61(.35)	.54	-.62(.35)	.54
4년제 대학 졸	-.01(.33)	.99	-.05(.33)	.95
대학원이상 졸	-.38(.46)	.69	-.43(.46)	.65
자녀변수				
첫째자녀 연령	-.24(.12)*	.79	-.26(.12)*	.7
자녀 수	-.43(.23)	.65	-.38(.23)	.68
가구변수				
배우자의 소득	.15(.09)	1.16	.15(.09)	1.16
거주지역 <sup>3)</sup>				
중소도시	.25(.24)	1.29	.22(.24)	1.25
읍·면지역	.28(.57)	1.32	.26(.57)	1.30
양육수당 수급여부	.12(.30)	1.13	-.41(.37)	.66
양육수당 수급여부X취업여부			1.25(.51)**	3.49
유효수(N)	432		432	
Likelihood X2(df)	63.16(11)**		69.57(12)**	
-2Log likelihood	-246.08		-24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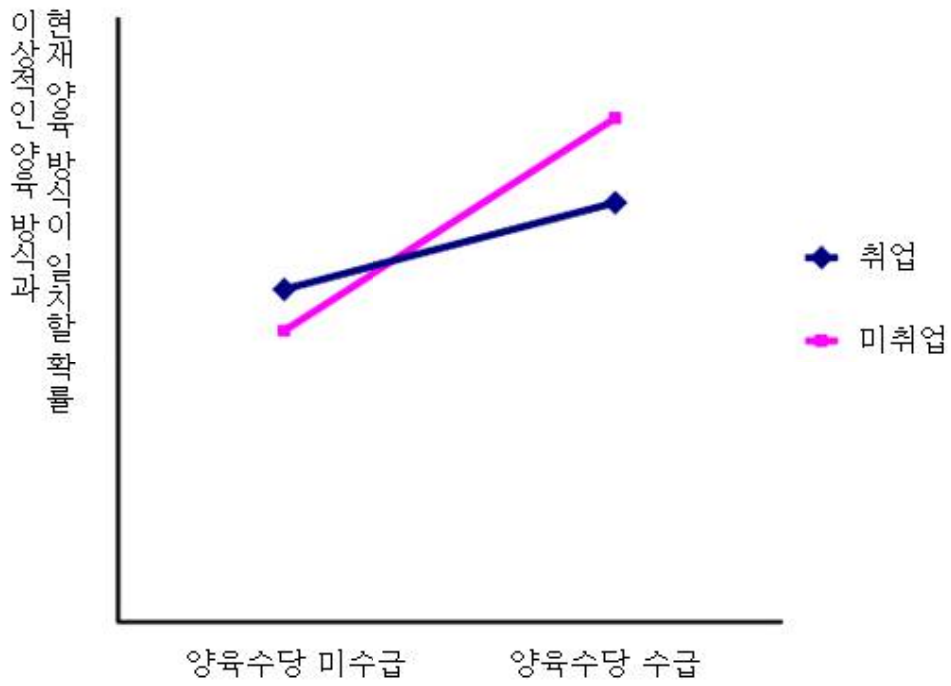
\*p<.05 \*\*p<.01

1) 0= 취업, 1=미취업

2) 기준집단 : 고졸 이하

3) 기준집단 : 대도시

<그래프 1>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수당 수급여부와 취업여부의 상호작용 효과



## VI. 결론 및 논의

2013년 1월부터 양육수당은 부모에게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시설보육을 이용하는 부모와의 형평성문제를 해결하고자 확대 시행되었다. 하지만 양육수당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양육수당은 자녀 양육 방식의 계층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 진행된 양육수당에 관한 연구 역시 양육수당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의 도입배경과 목적, 그리고 실질적인 시행이 외국의 사례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은 외국과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국내외 연구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양육수당의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이 자녀 양육 방식의 선택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먼저, 누가 양육수당을 선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수당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둘째, 양육수당이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 선택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만 0세부터 4세의 첫째자녀가 있는 어머니 432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어머니의 양육수당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에 양육수당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주요 변수들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수당의 선택여부에는 어머니의 취업여부, 첫째자녀 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가, 첫째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양육수당의 계층화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소득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배우자의 소득은 양육수당의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에는 어머니의 취업여부, 첫째자녀 연령, 양육수당 수급여부와 취업여부의 상호작용항이 영향을 미쳤다.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가, 첫째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이 일치하였다. 양육수당의 수급여부는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양육수당 수급여부와 취업여부의 상호작용항은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수당은 모든 어머니에게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을 일치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미취업모들에게는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을 일치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어머니가 미취업모이며 만 2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을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것은 양육수당이 가정 내 양육을 선택하는 가정의 양육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 배우자의 소득 변수는 양육수당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저소득층에서 ‘양육수당’, 즉 가정에서의 양육을 선택하는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것은 계층적인 요소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취

업여부와 자녀의 연령이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결과를 계층에 따라 자녀 양육 방식이 다르지 않다고는 해석할 수는 없다. 자녀 양육 방식은 가정 내 양육과 시설 이용과 같이 이분법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그 안에서도 다양한 양육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은 양육수당이 계층적으로 다르게 선택되지 않으며, 양육 방식의 계층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다. 보육서비스 제공의 정책이 중심이 된 우리나라의 양육환경에서 양육수당의 확대도입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그들의 양육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더불어 미취업모가 양육수당을 선택한다는 결과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양육정책은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휴가정책이나 직장 내 보육시설의 확충과 같이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 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양육수당은 미취업모들도 양육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서문희 외(2013)의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유아가구의 미취업모 비율은 59.7%로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들을 양육 지원 정책의 대상으로 흡수시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양육수당 선택에 자녀의 연령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시 말해 보육료지원/유아학비 선택에도 자녀의 연령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자녀의 양육 방식을 결정짓는 데는 자녀의 연령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부모는 자녀의 발달에 따라 적합한 양육 방식을 선택하고 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로 양육 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에 양육수당 수급여부와 취업여부의 상호작용항이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미취업모에게 양육수당이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

에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양육수당은 모든 어머니에게 이상적인 양육방식과 현재 양육방식을 일치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미취업모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양육수당은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에게 자녀 양육 방식의 선택권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양육수당은 미취업모들이 자녀를 가정 내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지원정책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육수당은 본연의 정책 목표인 현금지원을 통하여 가정 내 양육을 보조하고 자녀 양육 방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역할로써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취업모들에게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같은 휴가정책,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 탄력근무제와 같은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녀 양육 방식의 선택권을 제공해 준 측면이 있었다. 양육수당은 현금지원을 통하여 미취업모에게 자녀 양육 방식의 선택권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가정 내 양육의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써, 양육수당의 정책 목표 중 하나인 보육시설 이용의 가수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양육 방식이 부모에게 자녀의 양육 방식 선택권을 증진시키는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작년에 보육료를 수급하다가 올해부터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것으로 전환한 사람들을 살펴봄으로써 본 정책에 민감한 계층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양육수당 정책이 실질적으로 필요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규명하고 좀 더 그들에게 적절한 양육수당정책의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양육수당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게 좀 더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둘째, 선행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는 양육수당 선택의 계층화 효과를 보

다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경제적 지위를 파악할 수 있는 보다 상세한 변수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경제적 계층을 설명하는 변수로 배우자의 소득만을 선정하였다. 어머니 본인의 소득, 가구 소득, 가구의 자산 상태 등과 같이 개별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변수들을 연구에 포함한다면 양육수당이 지닌 계층적인 효과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누가 양육수당을 선택하는지를 규명하고, 양육수당이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 선택권을 보장하는가를 평가함으로써, 새롭게 개편된 양육수당의 기대효과를 평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앞으로 양육수당 뿐만 아니라 양육수당과 같은 현금지원방식의 양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본 연구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기획재정부(2010). 2011년 예산(안)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
- 김수미(2013.3.25). “영아 어린이집 이용 감소… ‘양육수당 효과’?”. 세계일보.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3/24/20130324002540.html>
- 김순미·이경희·성지미(2000). 기혼여성의 취업과 자녀보육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자녀보육의 형태와 지출비용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23, 219-239.
- 김현숙·이수진(2012). 보육산업의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응용경제**, 14(2), 5-30.
- 김지경(2004). 젊은 기혼여성의 출산 후 취업연속성 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3), 91-104.
- 김지경(2005).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과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3(6), 47-60.
- 박선욱(2008). 미취학자녀를 둔 가구의 자녀보육비 지출실태와 영향요인. **소비문화연구**, 11(2), 197-213.
- 박선욱(2011). 보육서비스 유형 선택과 비용의 결정요인. **한국생활과학회지**, 20(4), 831-847.
- 백선희·조성우(2005). 미취학자녀의 보육 교육비 지출수준과 결정요인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1, 429-455.
- 백선희(2012). 0~5세 무상보육 진단과 과제. **젠더리뷰**, 봄호, 50-56.
- 백은주·한선아·강민정(2011). 영아기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선호 유형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6(4), 209-232.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6-2010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

판).

보건복지가족부(2010). 보도자료 “아이사랑플랜 2010년 시행계획 및 제 2차 평가인증 시행방안 등 심의”.

보건복지부(2011a). 제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11~·15).

보건복지부(2011b). 2011년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보건복지부(2011c). 보도자료 “소득인정액 480만원 이하 가구, 보육료 전액지원” (2011.1.31.)

보건복지부(2013).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새누리당(2012a). 변화·맞춤·실천. 2012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새누리당(2012b). 세상을 바꾸는 약속 · 책임 있는 변화. 제 18대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서문희·김미숙·박세경·최은영·임정기(2004). **여성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2005). **자녀양육 실태와 보육 교육서비스 이용 및 비용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서문희(2010). **소득수준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과 비용 차이 분석 : 아동가구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육구 - 2009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심층분석-**.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서문희(2012.3.30). “0~2세 무상보육이 그늘”.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03/h20120329210110112020.htm>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3). **201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송다영(2009). 가족정책내 자유선택 쟁점에 관한 고찰. **페미니즘연구**, 9(2), 83-117.

- 송다영(2010). '자유선택'정책설계내 계층과 젠더 문제-한국 보육정책의  
형성과 재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8(4), 347-378.
- 여성가족부(2006). 새싹플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
- 유해미(2009). 양육지원정책에서의 '선택권'. **사회와이론**, 15, 297-329.
- 유해미·서문희·한유미·김문정(2011). **영아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양육수당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 유해미(2012). 양육수당의 효과와 개선과제. **육아정책포럼**, 29, 6-14.
- 윤홍식(2010). 가구특성과 취학 전 아동양육형태의 자유선택-직접양육,  
가족자원, 보육시설. **사회과학연구**, 26(1), 1-25.
- 이진숙(2010). 복지레짐별 일-가족양립정책과 선택의 자유에 대한 논의.  
**한국가족복지학**, 30, 379-404.
- 임유경(2008). 영유아 보육시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연  
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상설·홍경준(2012). 아동돌봄 유형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영아기 돌봄유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9(3), 29-57.
- 최현수·최준영·이경진(2012). **2013년 양육수당 확대 개편에 따른 선정  
기준 조정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한유미(2010). 양육수당 도입에 대한 어머니와 보육시설장의 인식. **아동  
학회지**, 31(2), 263-275.
- 홍승아(2005). 복지국가 재편과 젠더:프랑스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여성  
연구**, 69, 139-173.
- 홍승아(2008). **젠더관점에서 본 아동양육지원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기념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 홍승아(2011). 양육수당제도의 젠더효과에 관한 연구-핀란드 가정양육수  
당제도를 중심으로. **상황과 복지**, 31, 85-119.
- 허남재,석재은(2011). 한국의 보육료지원제도는 취업모 친화적인가?. **사**

회복지정 책, 38(2), 139-163.

- Arksey, H., & Kemp, P. (2008). *Dimensions of Choice : A narrative review of cash-for-care schemes*. Social Policy Research Unit, University of York.
- Blank, R. (2000) 'When Can Public Policy Makers Rely on Private Markets?', *Economic Journal*, 110, C34 - C49.
- Blomqvist, P. (2004). The choice revolution: privatization of Swedish welfare services in the 1990s.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38(2), 139-155.
- Breda, J., Shoenmaekers, D., Van Landeghem, C., Claessens, D., & Geerts, J. (2006). *When informal care becomes a paid job: the case of Personal Assistance Budgets in Flanders. Cash and Care: Policy challenges in the welfare state*, Policy Press, Bristol, 155-70.
- Brennan, D., Cass, B., Himmelweit, S., & Szebehely, M. (2012). Care, markets and migration in a globalising world: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2(4), 355-362.
- Eydal, G. B., & Rostgaard, T. (2011). Gender equality revisited - changes in Nordic childcare policies in the 2000s.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45(2), 161-179.
- Freedman, R. I., & Boyer, N. C. (1999) The power to choose: supports for families caring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ealth and Social Work*, 25(1), 59-68.
- Greener, I. (2008) 'Markets in the Public Sector: When Do They

- Work, and What Do We Do When They Don't?. *Policy and Politics*, 36(1): 93 - 108.
- Hamner, T. J., & Turner, P. H. (2001). *Parenting in contemporary society* (4th ed.). Needham Heights, MA : Allyn and Bacon.
- Hiilamo, H., & Kangas, O. (2003). Trap for women or freedom to choose?. *Paper for the inaugural ESP Anet conference*.
- Kremer, M. (2002). The illusion of free choice: Ideals of care and child care policy in the Flemish and Dutch welfare states.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Gender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Hrsg. Sonya Michel und Rianna Mahon. New York, Neudruck London, 113-142.
- Morel, N. (2006). Providing coverage against new social risks in Bismarckian welfare states: the case of long-term care. *The politics of post-industrial welfare states*, 227-247.
- OECD(2013). Family Database.

## <부록 1> 설문지5)6)

본 연구는 양육수당 확대가 양육 방식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만 0세-5세의 자녀가 있는 어머니로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디.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참여 도중에 어떤 불이익도 없이 그만 두셔도 됩니다.

본 연구는 2013년 현재 양육수당의 확대의 정책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20분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으나 귀하가 제공하는 소중한 정보는 양육수당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에서 얻어진 귀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집하고 처리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최슬민                      전화번호 : 02-880-877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5) 본조사는 웹설문지로 배포하였기 때문에 <부록 1>의 설문지와 양식이 다름.  
6) 연구에 사용하지 않은 설문문항은 제외함.

자녀 수	영아(36개월 미만) ___명 유아(만 3세 이상 미취학) ___명 초등학교 이상 ___명
------	--

1. 귀하의 첫째 아이의 연령은 몇 살입니까?

- 1) 영아(36개월 미만)                      2) 유아(만 3세 이상 미취학)

조사대상 : 자녀 출산순위 중 첫째 아이	첫째 연령 만_____세
------------------------	---------------

2. 귀하는 귀하의 첫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양육한다.
- 2) 가정에서 할머니 등 친인척이 양육한다.
- 3) 가정에서 아이돌보미 / 베이비시터가 양육한다.
- 4) 시간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 5) 전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 6) 시간제 유치원을 이용한다.
- 7) 전일제 유치원을 이용한다.
- 8) 기타 (\_\_\_\_\_)

3. 현재 귀하의 첫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 1)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양육한다.
- 2) 가정에서 할머니 등 친인척이 양육한다.
- 3) 가정에서 아이돌보미 / 베이비시터가 양육한다.
- 4) 시간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 5) 전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 6) 시간제 유치원을 이용한다.
- 7) 전일제 유치원을 이용한다.
- 8) 기타 (\_\_\_\_\_)

4. 올해는 어떠한 양육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 1) 보육료 / 유아학비
- 2) 양육수당
- 3) 둘 다 받지 않는다.

5. 귀하는 현재 취업(비정규직, 시간제 근로 포함)하고 있습니까?

- 1) 취업하고 있다.
- 2) 전에는 했지만 그만 두었다.
- 3)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6. 귀하의 배우자의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됩니까?

- 1) 100만원 이하
- 2) 100만원~200만원 이하
- 3) 200만원~300만원 이하
- 4) 300만원~400만원 이하
- 5) 400만원~500만원 이하
- 6) 500만원~600만원 이하
- 7) 600만원~700만원 이하
- 8) 700만원 이상



7.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

8.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1) 미혼   2) 기혼   3) 이혼 또는 별거   4) 사별   5) 기타

9. 귀하의 최종학력(졸업기준)은 무엇입니까?

- 1) 고졸 이하    2) 전문(2, 3년제)대학 졸  
3) 4년제 대학 졸                                      4) 대학원 이상 졸

## Abstract

# Influence of home childcare allowance on the choice of child rearing types

: Focused on the concordance between  
an ideal child rearing type  
and an actual child rearing type

Seulmin Choi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government provides two types of cash-benefit to family with 0-4 years old child(ren) for child-care. First type of cash-benefit is home childcare allowance which is provided in cash to the families who rear their children at home. Second type of cash-benefit is child-care subsidy which is provided to the families who use child day-care centers or kindergartens. Beginning of 2013, regardless of their income level, all parents who raise their child(whose child is) under 5 years old can receive either home

childcare allowance or child-care subsidy.

A right to child-rearing type means guaranteeing the right of the parents to choose their ideal way of child rearing among home care (by parents or by helpers), child day-care centers, or kindergarten.

Previous research and policy cases based on European countries reported that home childcare allowance had unintended outcomes and problems because it was differently used by the economic classes.

The aims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home childcare allowance influences mother's choice in their child rearing type. Two questions are 1) which factors influence mother's choice of home childcare allowance. 2) how home childcare allowance influences the concordance between ideal child rearing type and actual child rearing typ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32 mothers who had at least one child under 4 years old.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percentage, means and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other's employment status and age of first child affected the choice of home childcare allowance. Unemployed mothers and mothers with young-aged first child had a high tendency to choose home childcare allowance instead of child-care subsidy.

Second, mother's employment status, age of first child and an interactive term of mother's employment status and home care recipients influenced the concordance between ideal child rearing type and actual child rearing type. Unemployed mothers were more likely

to have a child-care type corresponding to their ideal type than employed mothers. Mothers with younger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an concordance between their ideal and the actual types of child-care.

Unlike the previous research, these results suggest that social class could not affect mother's choice of home childcare allowance in Korea. Rather, home childcare allowance positively influences realization of the right to choose their child rearing types among unemployed mothers. We could estimate that home childcare allowance provides financial supports to parents who raise their child at home.

By investigating how home childcare allowance affects the right of choice in child rearing type and examining to figure out the effects of home childcare allowance,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information to policy makers and researchers and contributes to develop cash-benefit policies for child-care further for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Keywords : Cash-benefit policy, Child-care subsidy, Child rearing type, home childcare allowance, The right of choice**

***Student Number : 2010-23637***